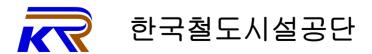


## KR A-03021

Rev.3, 03. December 2019

# 철도역사 설계





# **REVIEW CHART**

개정 번호	개정 일자	개정사유 및 내용(근거번호)	작성자	검토자	승인자
0	2017.12.30	철도고유기준 코드체계 구축 (설계기준처-3806, '17.12.20)	김한준	김정호	이만수
1	2018.04.25	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, 자체 개선사항 반영 개정 (기준심사처-240, '18.04.25)	김한준	최태수 한일승	손병두
2	2018.12.12	국민제안, 자체 개선사항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반영 (기준심사처-2772, '18.12.12)	김한준	민병균 한일승	손병두
3	2019.12.03	관련부서 / 관계기관의 의견, 자체	강대관	박창완 고재운	이종윤



### 경 과 조 치

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# 목 차

1. 철도역사 여객시설	· 1
2. 철도역사 역무시설	11
3. 철도역사 지원시설	16
부록1. 역사운영비품 제공 기준	20
해설1. 저상 및 고상승강장 지붕 예	21
해설2. 승강장 최소폭 예	22
해설3. 승강장 안전시설 예	22
RECORD HISTORY	24



#### 1. 철도역사 여객시설

#### (1) 출입홀

철도역의 출입 홀은 역사 내로 진입하는 공간으로 규모산정 시에는 콘코스 및 대합 실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다. 출입 홀은 철도역의 특성 및 상징성이 부여 될 수 있 도록 계획하며,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출입홀은 광장, 역사 관련사업 시설과 연계교통수단에서 접근되는 곳에 성격(규모, 색상, 볼륨 등)을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.
- ② 고속 및 일반철도(광역철도는 필요시)의 출입홀에는 콘코스에 냉·난방설비를 할 경우 내부의 공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풍실을 두어야 하며, 방풍실의 내부 출입문은 자동문 설치를 고려한다.
- ③ 광장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고,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어야 한다.
- ④ 출입홀에서는 많은 여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므로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하며, 병목현상이나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회전문등은 설치하지 않아 야 한다.
- ⑤ 이용인원이 많은 역사의 출입구는 콘코스 및 대합실의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며, 비상시 피난을 고려한 출입구 폭을 확보하되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한다.
- ⑥ 역사 출입문에는 출입문(방풍문)과 방범셔터를 병행설치하고, 셔터 고장시 출입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상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방범셔터와 방화셔터를 병행설치하는 경우 방범셔터가 외부에 위치하도록 한다.
- ⑧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 전면에 미끄러움이 우려될 경우 일정길이는 미끄럽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⑨ 무인간이역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주 출입구에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고, 정해진 인접 유인역에 원격제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# (2) 콘코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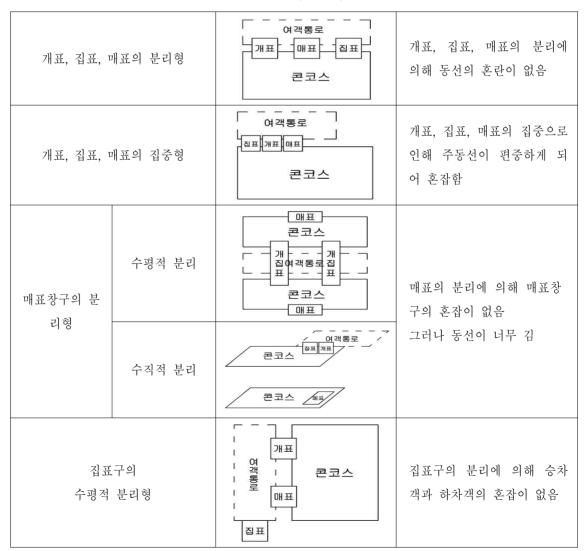
출입구와 승강장을 연결하며 승차 전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고 여러 동선이 만나며, 역내 여러 기능과 긴밀히 접속되어 승차준비, 정보습득, 각종 시설 이용, 체류, 대기 등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다.

- ① 콘코스에는 정보서비스시설, 편의시설, 식음, 공공시설, 판매시설, 노약자 및 여성을 위한 시설, 접객시설 등이 배치될 수 있다. 단 각 시설은 명확하게 분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② 콘코스와 승강장을 연결하는 동선은 콘코스 주위 상하에 설치되어 승강장으로 이르는 동선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한다.
- ③ 콘코스에서 승차객과 하차객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한다.



- ④ 콘코스에 설치되는 각종 안내시스템은 지침에 따라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, 여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.
- ⑤ 대형역의 경우에는 실내에 조경요소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 할 수 있다.
- ⑥ 체류공간과 유동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.
- ⑦ 콘코스 천장 높이를 적절히 하여 환기, 냉난방 및 조명효율을 높이고 음향(안내방 송)의 울림방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⑧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⑨ 콘코스와 승강장을 연결하는 통로에 출입문(자동문 포함)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⑩ 여객(콘코스, 대합실 등) 및 역무공간(역무실, 침실 등)의 공간활용을 위하여 벽체는 가변형으로 고려한다.
- ① 출입홀과 연결되는 콘크스 등 이용객의 주요 동선부분에 바닥 디자인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마감을 적용할 수 있다

표 1. 콘코스내 개표, 집표, 매표의 유형





#### (3) 대합실

여객이 승차를 목적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의자 등 편의시설 이 갖추어진 공간

- ① 대합실은 여객의 주동선과 분리하여 배치한다.
- ② 대합실에는 일렬대합의 좌석배치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합공간 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
- ③ 대규모 환승역의 경우 장기대합실, 특수대합실(영상, 단체), 일반대합실 등으로 구분 하여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.
- ④ 각 공간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.
- ⑤ 대합실에는 여객이 열차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안내표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⑥ 별도로 구획된 대합실의 천장 높이는 2.7m~3.2m를 확보하고 채광, 환기 등 환경조 건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한다.
- ① 대합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에너지 절약, 유지관리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.
- ⑧ 대합실 주변에는 여객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되 여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.

표 2. 대합실 유형

집중형	콘코스	일렬대합의 집중형 좌석배치
분산형(콘코스와 분리)	콘코스	콘코스와 분리하여 여러개의 대합 실로 분산하여 좌석배치
분산형(콘코스와 혼영)		콘코스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산 하여 좌석배치
혼합형(집중+분산)	콘코스 	- 집중형과 분산형이 섞인 좌 석 배치 - 기둥과 기둥사이에 좌석을 배치하 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

⑨ 무인간이역에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 할 경우,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인접 유인역에 원격제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

#### (4) 여객통로 및 환승통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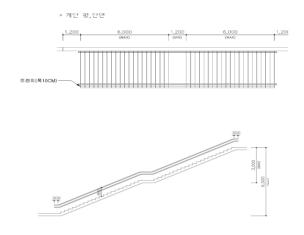
- 여객통로는 여객의 신속한 승하차를 위하여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공간. 주로 콘코스(Paid Area)와 승강장의 계단입구를 연결하는 수평, 수직적 통로를 말한다.
- 환승통로는 교통수단간 또는 역과 역간의 환승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평, 수직적 통로를 말한다.
- ① 통로는 동선이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고,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, 통로의 바닥은 미끄러움 방지, 유지관리 용이, 마모에 의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통로 폭은 최소한 연결되는 계단폭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피크시간대 통과하는 여 객의 유동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최소 폭은 한 지점에서 연결되는 계단 (에스컬레이터 포함)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한다.
- ④ 통로 길이가 긴 경우에는 Moving Walk 등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, 짐이 많은 여객의 Cart 이용 등을 고려한다.
- ⑤ 선상 여객통로의 경우 가능한 철골구조로 설계한다.

#### (5) 여객용 계단

- ① 계단의 단 너비는 300mm, 단 높이는 150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에스컬레이 터와 동시에 설치하는 계단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"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"에 따라 단 너비 280mm이상, 단 높이는 180mm이하로 할 수 있으며, 계단의 단 너비 및 단 높이는 균일해야 한다.
- ② 계단폭은 3m 이상으로 하고, 배선변경, 기존 구조물 저촉 등 부득이한 경우 2m이상으로 한다. 단, 에스컬레이터와 병행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.5m 이상으로 한다.
- ③ 계단참은 높이 3m이내마다 폭 1.2m이상으로 설치하되,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높이 1.8m이내마다 폭 1.5m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- ④ 계단참 폭은 1.5m를 표준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⑤ 계단폭이 3m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3m이내마다 분리대(난간)를 설치하여 야 한다. (단 계단의 단 높이가 150mm이하이고, 계단의 단 너비가 300mm 이상인 경우는 예외)
- ⑥ 계단의 양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되, 벽 마감면으로 부터 5cm이상, 계단 바닥으로 부터 85cm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손잡이는 계단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30cm이상 연장되어야 한다.
- ⑧ 계단손잡이의 시작부분 및 끝부분에는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판을 설치하여 한다.
- ⑨ 벽에 부착하는 손잡이의 지지대 설치간격은 0.9m를 표준으로 한다.



- ① 계단의 양측면에는 청소용 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폭은 최소 10cm를 표준으로 하되 계단의 폭에 따라 트렌치(trench) 폭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① 여객용 계단은 이용객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(자전거 경사로 등)을 설치 할 수 있다.
- ② 외부 여객용 계단 출입구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외기(눈,비 들이침등)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

#### (6) 여객화장실

여객 화장실은 대소변 및 세면 등의 기능 및 기타(화장, 유아 등) 기능을 위한 시설 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, 여객 화장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화장실은 콘코스·대합실 등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.
- ② 화장실은 여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합실 또는 콘코스에 인접하여 배치하고, 이용자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창, 생태공간 및 대기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③ 화장실(장애인용 포함)은 남, 여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여자 변기수는 남자 대변기. 소변기수의 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⑤ 화장실에는 청소도구 보관 및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⑥ "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남·여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대·소변기,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.
- ⑦ 소변기의 간격은 0.75m를 표준으로 하고, 어린이용 벽걸이형은 바닥에서 20~30센 티미티 이내에 설치한다. 소변기 사이 칸막이는 불(반)투명 재료로 높이 1.5m이상 설치하고, 자동감지식 세정기 및 소지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다.
- ⑧ 대변기 칸막이의 크기는 1.0m × 1.5m, 높이는 1.8m를 표준으로 하며, 칸막이 안에는 쇄정장치, 휴지걸이, 옷걸이,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하고, 출

KTX

입문에는 동·서양 변기 종류를 알 수 있는 표식과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인식장치 (LED표지식 또는 쇄정연동식)를 설치한다. 필요시 주출입구에도 화장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안내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다.

- ⑨ 세면대 주변에는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및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고, 여 자화장실에는 가급적 세면대 외에 파우더 룸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①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 천정높이는 최소 2.4m 이상으로 계획한다.
- ① 화장실 세면기는 카운터를 사용하여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, 세면대의 높이는 0.72m, 간격은 0.75m를 표준으로 한다(단 어린이용 세면대 높이 60센티미티 이하 또는 높이조절 가능하는 구조로 설치)
- ② 화장실 바닥 및 벽은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후 마감재를 붙이되, 벽의 방수 높이는 1.2m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1층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하부는 배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체 피트(pit)로 설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전차선 상부에는 화장실 배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. 그러나 부지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피트(pit)를 설치하여 배치할 수 있다.
- ⑤ 화장실의 창대 높이는 1.5~1.8m로 하여야 한다.
- (b) 화장실 위치는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,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
- ① 대변기는 서양식과 동양식 설치비율을 남자 8:2, 여자 7:3 로 서양식 변기를 많이 설치하되,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⑧ 긴급 상항에 대비 화장실 내 긴급 호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① 장애인용 화장실은 "장애인· 노인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" 및 "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" 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역사내 여객화장실을 분산 배치시 여객화장실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여객화장실(남·여)은 동일 위치에 배치할 경우, 가급적 화장실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에 여자화장실을 배치하고, 우측에 남자화장실을 배치하며, 막다른 복도에 배치할 경우는 안쪽에 여자화장실을 배치한다.
- (7) 여객편의시설
  - 여객의 편의를 위해 콘코스, 대합실 주변에 설치하는 상업시설(커피숍, 서점, 간이음식점 등)을 말한다.
- ① 시설면적은 콘코스 면적의 5% 이상으로 하고 최소 10㎡이상 확보 (지역여건, 수송 수요 등 고려하여 철도운영자와 협의시행)한다.
- ② 공간활용을 위해 벽체는 가변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

- ③ 시설 배치는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여 별도의 독립된 매장을 구성하고, 여객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콘코스, 대합실, 승강장 및 통로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.
- ④ 상업시설은 전면 오픈으로 설계하고 입점업체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⑤ 상업시설 설치 위치에 전기, 수도, 통신시설 등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.

#### (8) 엘리베이터

교통약자, 짐이 많은 여객 등이 외부(광장, 도로 등) ⇄ 대합실 및 콘코스 ⇄ 승강 장 간의 수직이동 시 이용하게 하는 설비로서, 엘리베이터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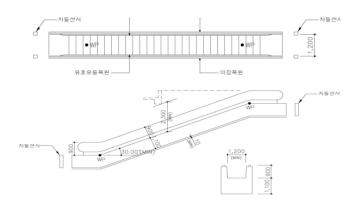
- ① 교통약자의 승강시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 등이 외부(광장, 도로 등)로부터 대합실 및 개집표소를 경유 하여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승강장에는 1개소 이상(환승 등)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.
- (5) 엘리베이터 형식은 로프식 또는 기계실 없는 타입(MRL)으로 설치한다.
- ⑥ 사용자(운영자)가 요구하는 도안이 있을 경우 협의한다.
- ⑦ 외부누드형 엘리베이터는 온실효과가 예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⑧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은 "KR A-03071(교통약자 편의시설 설계)"에 따른다.

#### (9) 에스컬레이터

- ① 여객이 이용하는 모든 계단에는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하나의 통로로 이어지는 2개소의 계단에는 적어도 1개소 이상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.
  - (가) 외부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을 참고한다.
    - ⑦ 통로폭에 따라 상·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또는 상·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 치하고 폭 1.5m 이상의 보조계단 설치
- (나) 내부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다음을 참고한다.
  - ② 일반역 상대식 승강장은 상·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
  - ① 일반역 섬식 및 환승역 상대식 승강장은 상·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폭 1.5m이상의 보조계단 설치
  - © 환승역 섬식 승강장은 상·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폭 3.0m이상의 보조계 단 설치
- ②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

- ③ 지하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(비상시 대비)
- ④ 사용자(운영자)가 요구하는 도안이 있을 경우 협의한다.
- ⑤ 외부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피트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, 출입구 캐노 피를 설치할 경우 외기(눈,비들이침등)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승강장에서 선로와 인접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끝단 측면 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는 유모차, 카트 등의 진입을 막는 진입방지봉(볼라드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- ⑧ 이용자 주의환기 및 안전사고 예방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친화형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.(난간 및 스텝디자인, 안전표시, 충돌방지 조치 등)
- ⑨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은 "KR A-03071(교통약자 편의시설 설계)"에 따른다.

#### (10) 승강장안전문설비(스크린도어)

"승강장안전문설비(스크린도어)"는 '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'를 말하며, 승강장의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 시설 중 하나로써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 제57조(승강장) 및「도시철도건설규칙」 제30조의2(승강장의 안전시설)에 따른다.

#### (11) 승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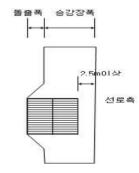
열차의 발차와 정차가 이루어지고 여객이 승하차 하는 공간

- ① 승강장 폭은 이용수요를 분석하여 적정폭원을 산정하되,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아래의 설치를 감안한 폭원 이상으로 한다.
  - 에스컬레이터 1200mm 2대(상, 하행)
  -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통로 유효폭(2.0m) 이상
  - 승강장 연단에서 안전거리(0.5m) 이상
  - 기둥, 벽 등의 건축물 구조체 치수 이상
- ② 열차 진출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폭을 확보한다.
- ③ 지상 승강장은 외부기상조건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고, 선하역사



등 인근 지대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승강장은 이용자의 외풍에 대한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외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(단. 방음벽이 설치되는 곳은 제외)

- ④ 외부에 노출된 승강장의 바닥은 겨울철 눈·비 등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럽지 않은 재료(석재, 타일 등)로 마감한다.
- ⑤ 승강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(매점, 자판기, 의자, 휴지통 등)은 여객수요, 승강장 폭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.
- ⑥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승강장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홈대합실 (고속철도 2 개소, 일반철도 1개소)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, 시·종착역인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(7) 선로 상부면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수직높이는 7.01m를 표준으로 한다.
- ⑧ 지하승강장의 계단부는 화재시 연기 및 열기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연경계벽, 수 막설비(water Curtain)등에 의해 구획 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.
- ⑨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의 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. 특별피난계단은 섬식 승강장에서는 1개소이상, 상대식 승강장에는 각 편측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.
- ⑩ 전철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지장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승강장폭을 확보 하여야 하다.
- ② 지하역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강장 폭을 조정하여 적용한다.
  - 계단(에스컬레이터)이 설치되는 승강장 부분만을 특별히 확폭하여 승강장 연단에서 계단(에스컬레 이터)부까지의 거리가 2.5m이상 확보되는 경우 에는 확폭한 치수만큼 승강장 폭을 완화하여 적용한다.



#### ③ 승강장 설계

- 안전펜스는 강화유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
- 정차 위치표시 재료는 동판으로 하고, 승강장 청소를 위해 수도시설을 설치한다.
- 홈지붕은 외관 고려 및 열차단 효과 및 결로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마 감재료로 설계한다.
- 홈지붕 기둥형태는 여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.
- 승강장에 개별로 설치되는 홈지붕 처마 끝 하단까지의 높이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강장 바닥면으로부터 고상홈은 3.6m, 저상홈은 4.2m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홈지붕의 구조 또는 형태 등을 감안하여 높이를 조정할 경우에도 눈・비 들이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홈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신설(마감재 일체화 시공)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집열판을



홈지붕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므로 녹 및 부식 등을 고려하고 홈지붕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, 기존 홈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시설물(철골부재, 지붕판 등 마감재)의 마감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돔형식의 홈지붕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, 눈, 비 들이침을 막고 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광역철도역의 승강장은 필요시 후사경 등 차장 승무생략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광역철도역 중 배차간격이 긴(15분 이상) 외곽노선의 경우 승강장에 홈대합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.
- 광역철도 종착역 승강장(또는 인상선)에는 필요시 열차 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검토한다.
- 광역철도역의 승강장 연단과 차량 거리간 100m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 여객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
- 승강장의 시·종점부에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높이 1.2m 이상의 난간 또는 필요시 1.5m 높이의 방벽을 설치하며,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0.9m 이상의 통로, 계단 또는 경사로와 선로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(에스컬레이터 포함)에 눈·비 등이 들이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강화유리 등 투명한 자재로 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선상역사 등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측면과 홈지붕 사이는 눈·비 들이 침을 막을 수 있는 비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승강장 홈지붕의 선홈통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출구를 선로측 상부 (자갈도상)로 설치 한다.
- ④ 여객이 이용하는 무인역에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가 포함된 홈대합실을 설치 할 경우,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인접 유인역에 냉난방설비를 위한 원격제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#### (12) 안내소

여객에게 여행(지역 관광명소 및 특산물 등) 및 열차정보 및 역구내 시설 등의 정 보를 제공하는 곳

- ① 안내소는 역사의 규모, 근무인원에 따라 별도 설치여부를 검토하고, 지역 관광안내 센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시 검토·협의할 수 있다.
- ② 안내소의 위치는 승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승객의 이동동선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안내소 카운터 높이는 대합실 바닥에서 1.0m로 하고 여객용 의자가 설치될 경우 0.65m 정도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## (13) 수유실



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한 휴식과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

- ① 수유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10㎡이상의 공간과 아기침대, 쇼파, 기저귀교환대, 세면기 등의 집기시설을 확보한다. 위치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, 역무실에 인접 또는 역무실 내에 계획한다.
- ②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
- 바닥 : 중 보행 타일

- 벽 : 친환경방염 실크벽지

- 천장 : 친환경방염 실크벽지

③ 창호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

#### 2. 철도역사 역무시설

- (1) 매표실(광역철도 등 매표창구를 운용하지 않는 역사 제외)
- ① 매표실의 위치는 여객이 접근하기 쉽고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 하도록 하며,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매표창구 1개의 폭은 1.8m를 표준으로 하되, 기둥간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③ 매표대의 높이는 대합실 바닥에서 1.0m. 매표실 바닥에서 0.73m를 표준으로 한다.
- ④ 고속 및 일반철도역의 매표 창구형태는 개방형(Open Type)을 원칙으로 하며, 상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매표창을 설치한다.
- ⑤ 매표창 유리는 접합유리,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 파손시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고 방범용 셔터를 설치한다.
- ⑥ 매표실 외부 상단과 천장사이에는 운임표, 시각표, 노선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(H:1.2m 이상)을 확보한다.
- ⑦ 매표창구 중 1개소 이상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, 창구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(매표대 높이 0.7m~0.9m, 하부높이 65cm, 깊이 45cm 이상)을 확보하며, 매표창구가 1개소인 소규모 역사의 경우는 일반인이 겸용할 수 있도록 매표대 높이를 대합실 바닥에서 0.9m로 한다.
- ⑧ 매표대의 재료는 화강석, 대리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.
- ⑨ 매표대의 너비는 700mm (매표실측 350, 대합실측 350)를 표준으로 한다.
- ⑩ 매표실이 외부에 면할 경우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① 매표실의 천장 높이는 2.3 ~ 2.6m 로 하여야 한다.
- ② 매표실에는 규모에 따라 적정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한다.
- ③ 매표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이중바닥판(H: 250mm)위 전도성타일(T: 3.0mm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(H: 100mm)



- 벽 : 맞이방 인테리어 설계와 병행하여 마감재 결정

- 천 장: 경량철골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(텍스)

⑭ 매표실과 역무실의 벽체는 가변형으로 설치한다.

※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.

#### (2) 역장실

- ① 역장실은 역운영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하며, 역무실과 통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.
- ② 역장실은 콘코스, 대합실 또는 광장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역무실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창문 형태는 가급적 미서기 이중창으로 하고. 외부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역장실의 천장 높이는 2.4m ~ 2.6m로 하여야 한다.
- ⑤ 역장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: 비닐쉬트 바닥재(중보행용) (T: 2.0mm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 장:경량철골천장틀위 불연 천장재(텍스)

#### (3) 역무실

역무실은 영업, 운전, 직원관리, 여객안내 등의 역의 일반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

- ① 역무실은 가급적 1면 이상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 실내가 밝고 쾌적하게 유지 되도 록 하여야 한다.
- ② 운전취급역으로서 운전취급실이 별도 설치되지 않고 신호조작판을 운영할 경우 로 컬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.
- ③ 여객안내를 위해 콘코스(대합실)에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④ 역무실의 위치는 가능하면 선로측에 면하도록 하여 운전취급, 열차 감시 등이 용이 하도록 하고. 선로측과 연결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역무실의 창대 높이는 0.9~1.0m로 하여야 한다.
- ⑥ 역무실 창문 형태는 가급적 미서기 이중창으로 하고 외부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 야 한다.
- ⑦ 역무실은 사무휴게 및 집기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⑧ 역무실의 천장 높이는 2.4m ∼ 2.6m로 하여야 한다.
- ⑨ 역무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:비닐무석면 타일(T: 3.0mm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고무굽도리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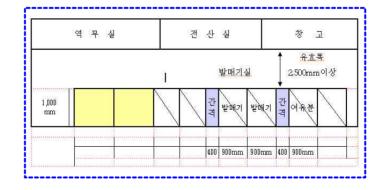


- 천 장:경량철골천장틀위 불연 천장재(텍스)
  - ※ 역무실 출입문은 고객이 쉽게 인지하여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강화유리문 설치를 권장하며, 필요시 전자도어록(번호키)을 설치 할 수 있다
- ⑩ 광역철도 통합역무공간
- 광역철도 역무시설(역무실,자동발매기실,전산실,안내소등)은 운영 효율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치 한다. 다만, 통합설치가 어려울 경우 분리 설치 할 수 있다.
- 통합역무공간을 설치 할 경우는 여객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Gate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여객관찰이 용이한 방향의 벽을 전체 또는 부분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

#### (4) 자동발매기실

자동발매기실은 승객들이 역무원의 도움 없이 발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

- ① 자동발매기는 여건에 따라 매립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를 계획할 수 있다.
- ② 매립형 자동발매기실 위치는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 하여야 한다.
- ③ 자동발매기는 매립형으로 매표소 안쪽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.
- ④ 매표소에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.
- ⑤ 매립형은 자동발매기실의 크기는 통신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.
- ⑥ 광역철도(전철) 매표업무를 위한 자동발매기실 설치공간은 사용자 (운영자)의 매표 자동화 전환 계획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.
- (7) 자동발매기실에는 냉방 및 환풍 설비를 설치 한다
- ⑧ 자동발매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닥 : 비닐무석면타일(T:3.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장 : 경량철골 천장틀위 불연 천장재(텍스)



#### (5) 창고

창고는 역사 규모에 따라 잡품창고, 비품창고 등을 계획하고, 보관용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소규모역사 : 잡품창고



- 중규모역사 이상 : 잡품창고, 비품창고 등

#### (6) 탈의/샤워실

탈의/샤워실은 직원들의 탈의 및 샤워를 위한 곳으로 침실 내 샤워실 외에 별도 공간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
- ① 탈의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탈의실은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탈의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탈의실의 천장 높이는 2.4 ~ 2.6m로 하여야 한다.
- ④ 탈의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판넬히팅(H: 120mm)위 비닐쉬트 바닥재(장판용 T: 1.8mm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 장:불연 천장재(텍스)
- ⑤ 샤워실 바닥 및 벽은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후 마감재를 붙이되, 벽의 방수 높이는 천장높이까지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.
- ⑥ 샤워실의 바닥 및 벽의 마감은 타일붙이기를 표준으로 하고, 샤워실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⑦ 샤워실의 천장은 경량철골 천장틀 위 알루미늄천장재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, 샤워실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⑧ 1층에 설치하는 샤워실의 하부는 배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체 피트(Pit)로 설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⑨ 샤워실의 창대 높이는 1.5m 이상으로 하고,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⑩ 샤워실은 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① 샤워기는 벽체에서 0.5m, 각 샤워기의 간격은 1.0m를 표준으로 한다.
- ② 입식 샤워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.8m를 표준으로 한다.
- ③ 입식 샤워기의 개폐 밸브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.85m를 표준으로 한다.
- ⑭ 샤워실의 천장 높이는 2.4 ∼ 2.6m로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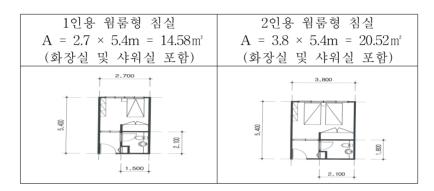
#### (7) 침실/휴게실

침실은 직원의 휴식 및 야간 취침을 위한 곳

- ① 침실은 남 · 여 구분하여 취침(수면)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침실은 1인1실을 기준으로 하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배치한다.
- ③ 공익요원과 용역원 휴게실은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하되, 소규모 인원 근무시 통합 계획할 수 있다.
- ④ 침실의 위치는 채광 및 환기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.
- ⑤ 침실 내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구류 및 옷장을 겸한 반침을 붙박이장으로 설치하되, 반침의 폭은 0.8m를 표준으로 한다.



- ⑥ 침실 창문은 미서기 이중창을 원칙으로 하되, 내부에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고, 외부로부터 직접 침입이 가능한 창문은 방법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침실에는 햇빛차단을 위한 커텐을 설치하되 종류는 천 커텐을 원칙으로 한다.
- 8) 침실의 천장 높이는 2.4 ~ 2.6m로 하여야 한다
- ⑨ 침실은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이 저감되도록 계획 (중문설치 등) 하여야 한다.
- ⑩ 마감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판넬히팅(H: 120mm)위 비닐쉬트 바닥재(장판용 T: 1.8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방염 실크벽지붙이기
  - 천 장: 경량철골 천장틀 위 석고보드 (T: 9mm)위 방염 실크벽지
- ① 벽체는 가변형 설치를 고려한다.



- ※ 침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직원화장실, 샤워실(탈의실 포함), 갱의실, 휴게실 미설치
- (8) 쓰레기분리수거장
- ① 면적: 12~20m²
- ② 차량접근이 용이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한다
- ④ 건물 위치(정화조 연결이 가능한 곳)등을 고려하여 수도 및 배수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
- (9) 탕비실

직원의 간이취사를 위한 공간

- ①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.
- ② 취사에 필요한 설비(수도, 가스 등)를 갖추어야 하며 소형싱크대 및 벽찬장, 가스대, 냉장고, 식탁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환풍 설비를 한다.
- ③ 탕비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닥: 비닐무석면타일(T:3.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장 : 경량철골 천장틀위 불연 천장재(텍스)
- ④ 공익요원실 및 용역원 휴게실의 탕비실은 필요시 설치 할 수 있다



#### (10) 세탁실 및 건조실

세탁실과 건조실은 적정규모 이상(2급역 이상)인 역사에 대해 필요시 설치 할 수 있다

#### 3. 철도역사 지원시설

#### (1) 전기실

역구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공간

- ① 전기실의 위치는 장비의 중량, 반입 등을 고려하여 1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, 단점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1층 이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장비교체를 위한 설비(화물용 엘리베이터, 외부반입 구 등)를 설치한다
- ③ 전기실의 천장고는 3.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기기 배치시 최소 이격거리는 다음 표를 참조하며, 유지보수 및 교체시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부위별 기기별	앞면 또는 조작, 계측면	뒷면 또는 점검면	열상호간 (점검하는면)	기타의 면
특별고압반	1,700	800	1,400	_
고압배전반	1,500	600	1,200	_
저압배전반	1,500	600	1,200	_
변압기 등	1,500	600	1,200	300

- 주) 1.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거리이며,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  - 2. 열상호간(점검하는 면)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 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, 계측면과 같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  - 3.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, 이 경우도 사람 의 통행이 필요 할 경우는 600mm이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- ⑤ 전기실의 출입문은 철재여닫이로 하되, 별도의 장비 반입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폭 2.5m, 높이 2.5m로 하여야 한다.
- ⑥ 전기실의 창문은 외부에서 투시되지 않도록 고창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, 창문의 외측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전기실의 바닥에는 배선용 트렌치(폭 0.6m, 높이 0.3m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⑧ 전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반입구 등을 고려하고, 특히 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
- ⑨ 전기실을 부득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치할 경우에는 배선 인입을 위한 수직



덕트(0.6m×0.5m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⑩ 전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

- 바 닥: 모르타르바르기 위 우레탄

- 걸레받이 : 모르타르바르기 위 흑색계통 조합페인트칠(H: 100mm)

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
- 천 장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
#### (2) 기계실

역 또는 건물의 기계설비시스템(냉, 난방 등)의 장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

- ① 냉난방을 위한 냉온수의 상향 공급을 위해 지하 또는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중앙감시실은 출입동선이 원활하고 채광 등이 유리한 곳에 배치한다.
- ③ 바닥에 설치되는 기초대는 장비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④ 바닥에는 표면 강화제를 도장하도록 하고,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배수를 유도할 수 있는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한다.
- (5) 열원기계의 열 발산 및 급배기와 채광을 위한 드라이 에리어(D.A)를 설치한다.
- ⑥ 출입구는 장비의 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⑦ 기계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닥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에폭시코팅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장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
#### (3) 신호 계전기실

신호보안시설 및 CTC(Centralize Traffic Control)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

- ① 계전기실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② 계전기실(수직덕트 포함) 규모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호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.
- ③ 출입문은 철재 쌍여닫이(1.8m×2.1m)로 하여야 한다.
- ④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되 채광이 용이 하여야 하며,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창문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하고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계전기실에는 환풍기(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)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환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 전등의 배열은 조명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열하고 표시반이 잘 보이도록 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⑦ 계전기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고속철도 3.2m이상



- 일반철도 2.8m이상
-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
- ⑧ 기기 배치시 최소 이격거리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(신호제어편, KR S-01030:해설1)을 참고하여 계획한다.
- ⑨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① 계전기실은 건물 배치상 선로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계실 인입구에는 케이블 인입용 맨홀 2개소를 각각 다른 개소에 설치한다. (신호분야시공)
- ① 계전기실은 가능한 운전계장실(운전취급실 포함)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계전기실은 선로와 동일한 지면에 설치하되 이를 달리할 경우 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수직덕트(기본:1m×1m) 2개소를 각각 다른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케이블을 행거로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  - ※ 수직덕트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여자화장실, 철도사법경찰대 보안구역 등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.
- ① 계전기실에는 면적에 알맞은 자립형(스탠드 또는 바닥상치) 냉/난방기(필요시 항온 항습기) 실외기를 전용으로 설치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외기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④ 계전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이중바닥판(H: 250mm)위 전도성(정전기방지)타일(지지대 접지는 신호분야 에서 시공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 장:경량철골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(텍스)
  - ※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.

#### (4) 신호 전원실/축전지실

신호기계의 전원 공급을 위한 정류기 및 배전반 등의 장비운용을 담당 하는 장소

- ① 전원실/축전지실의 통합・분리 설치는 신호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.
  - ※ 가스발생이 적은 축전지의 경우 전원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, 그렇지 않은 축전지의 경우 별도의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전원실/축전지실 위치는 신호계전기실 및 통신실에 인접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.
  - ※ 이중바닥판 하부에 계전기실과 전원실/축전지실 사이에 격벽이 있을 경우 케이블 인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전원실/축전지실의 규모는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호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.
- ④ 출입문은 철재 쌍여닫이(1.8m×2.1m)로 하되, 설치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

- ⑤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되, 채광이 용이하여야 하며, 외부침입 방지를 위하여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.
- 6 전원실/축전지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고속철도 3.2m이상
  - 일반철도 2.8m이상
  -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
- ⑦ 전원실/축전지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이중바닥판(H:250mm)위 전도성(정전기방지)타일(지지대 접지는 신호분야 에서 시공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 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 장 : 경량철골 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(텍스).
  - ※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.
- ⑧ 전원실/축전지실에는 면적에 알맞은 자립형(스탠드 또는 바닥상치) 냉/난방기(필요시 항온항습기) 실외기를 전용으로 설치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외기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#### (5) 통신기기실

역무용 및 지원용(철도기반 인프라) 정보통신기기가 설치되는 기기실(상주직원 없음)

- ① 통신기기실의 위치는 역무실과 인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하층에는 배치하지 않는다.
- ② 통신기기실의 규모 및 실내 케이블 인입용 덕트 규모, 천정 점검구 등은 통신분야 협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.
- ③ 통신기기실의 천장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고속철도 3.2m이상
  - 일반철도 2.8m이상
  - 실내설비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높이
- ④ 통신기기실은 역무용 통신기기와 지원용 통신기기 배치공간을 각각 구분하도록 계획하되 부분 투시형 불연성 칸막이를 사용하여 가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⑤ 장비배치시 기기간 이격거리 및 기기 앞면은 1.5m이상, 기기 뒷면은 0.6m 이상을 확보(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)하여야 한다.
- ⑥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설비는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하되, 필요시 동일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.
- ⑦ 통신기기실의 출입문은 역무용 통신기기와 지원용 통신기기 배치공간에 각각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철재 쌍여닫이(1.8m × 2.1m)로 하되 설치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⑧ 통신기기실의 창문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창문외측에는 방범창을



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설계할 경우 소화약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및 고정창으로 할 수 있다.

- ⑨ 통신기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,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
  - 바 닥 : 이중바닥판(H:250mm)위 전도성(정전기방지)타일 (지지대 접지는 통신분야에서 시공)
  - 걸레받이 :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 (H: 100mm)
  - 벽 :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
  - 천 장:경량철골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(텍스)
  - ※ 통신기기실은 바닥 마감은 이중바닥판 또는 단차 해소를 위해 Down Slab로 계획 할 수 있고, 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 높이를 계획한다



#### 부록1. 역사운영비품 제공 기준

- (1) 역사 및 현업처소 : 고객용 편의시설 제공
- ① 맞이방: 의자, 수유실(아기침대, 기저귀교환대, 쇼파)
- ② 승강장: 여객용의자, 휴지통
- (2) 광장 : 평의자, 휴지통
- (3) 화장실 : 고객용 편의시설 제공
  - ① 공통: 전기방열기(동파방지), 핸드드라이, 수건걸이, 휴지걸이, 물비누통,(비누대), 사용중 표시판, 기저귀교환대 등
  - ② 여자화장실: 에티켓벨
- ③ 남자화장실: 소변기센서
- (4) 각 기능실 제공
- ① 탕비실: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(씽크대, 벽찬장, 렌지대, 렌지후드)
- ② 휴게실: 고정식(이불장, 신발장 등)
- ③ 탈의실 : 공동샤워실 설치 시 부속되는 탈의실 락커
- ④ 회의실 및 교양실 비품은 제외



#### 해설 1. 저상 및 고상승강장 지붕 예

1.1 고상승강장의 홈지붕의 처마높이는 <그림 1.1>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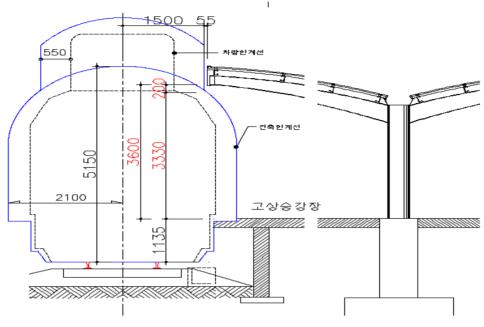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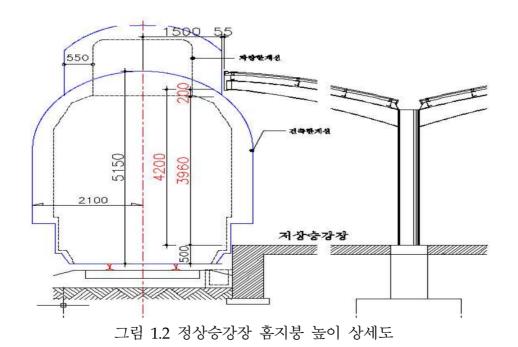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1 고상승강장 홈지붕 높이 상세도

1.2 저상승강장의 홈지붕의 처마높이는 <그림 1.2>과 같다.



KR A-03021



#### 해설 2. 승강장 최소폭 예

아래의 승강장 폭은 최소폭원으로 노반 등 타 분야와 인터터페이스를 위한 참고자료이며, ()안의 수치는 에스컬레이터를 800mm으로 설치할 경우 최소폭원임.

고상 승강장		저상 승강장		
섬식	9.50m(8.70m)	섬 식	8.50m(7.70m)	
상대식	6.50m(5.70m)	상대식	6.00m(5.20m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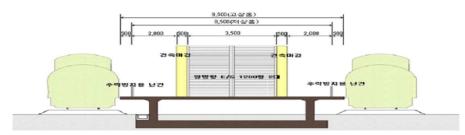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 섬식 승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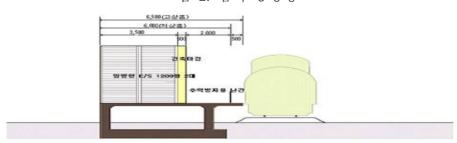


그림 3. 상대식 승강장

#### 해설 3. 승강장 안전시설

승강장 안전시설이란 승강장 내 안전펜스, 스크린도어(PSD) 등을 말하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승강장 안전시설의 설치 세부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철도역사, 도시철도역사, 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(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[별표 1]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1), 2호너목)
  - ①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/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, 다만,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  - ③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.3m 내지 0.9m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④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cm 이내로 하여야 하며,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

<sup>1)</sup>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(교통약자의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)

KTX

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서비스 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- ⑤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하여 휠체 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·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 승·하차 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.
- ⑥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,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 으로부터 높이 1.1m 이상 1.5m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⑨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승강장 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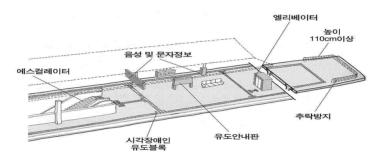


그림 4. 승강장 시설물

#### (2) 승강장 안전펜스

안전펜스는 강화유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 승강장 안전펜스 적용도면을 예시하면 <그림 5>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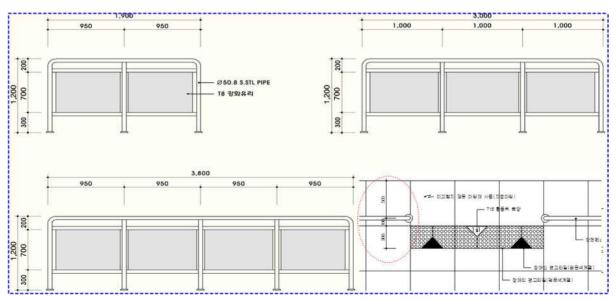


그림 5. 승강장 안전펜스 예



### RECORD HISTORY

Rev.0('17.12.30) 2020년 UIC와 동등한 수준의 기준 고도화를 위해 철도고유기준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한,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코드체계로 제정

Rev.1('18.04.25)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, 자체 개선사항 반영 개정

Rev.2('18.12.12) 국민제안, 자체 개선사항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반영

Rev.3('19.12.03)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, 자체 개선사항 등 반영 개정